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872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김태선 · 윤종균 · 한준호  
김주영 · 강득구 · 강경숙  
김병주 · 진성준 · 김기표  
김영환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 29조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② -----<br>-----<br><u>2029년 12월 31일</u> -----<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